

[2023 개정 세법]

세금,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어요! 김철훈 세무사

연봉과 지출 금액이 같아도 연말정산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 바로 내야 할 '세금'
때문이다.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세금.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대표 세무사와 함께
2023년 개정 세법과 절세 방법을 알아본다.

글 편집실 사진 류창렬



유튜브: 현대오일장
김철훈 세무사 인터뷰 영상 바로 가기

Q. '세금' 하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세금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다소 식상하지만 매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세금이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면, 죽음은 평생 한 번 경험하지만, 세금은
지금도 계속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더라도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가 있잖아요. 돈을
쓸 때마다 세금을 내는 셈이죠. 월급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세가 책정되어 있는데, 내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을 떼어갑니다.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고, 돈을 써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Q.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 월급이 같아도 환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내가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쓰고 남은 금액을 줄여야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드는데,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남은 금액을
줄일 수 있죠. 이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공제 금액도
달라지고, 환급금도 차이가 납니다.
은행 대출금을 갚거나 병원비, 식사비, 쇼핑 등 돈을 쓰는 곳은
다양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지출 방법도 다양하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전통 시장에서 구입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150만 원, 체크카드는 300만 원, 전통 시장 구입은
4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급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더불어
자녀와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라도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연봉과
지출 금액이 같아도 환급금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죠.

Q. 2023년 개정 세법 중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먼저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이 낸 월세의 15%,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라면 17%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분이라면 관련 세금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유예됐죠.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은 현행대로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일반인이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는 거죠. 과세 기준을
대폭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올해는 변경 없이 기존처럼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했을 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특히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항목이 있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개정입니다. 하위
2개 구간이 상향 조정됐는데요. 기존 1,200만 원은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은 5,000만 원으로 적용 구간이 높아져서 1,400만 원
이하는 6%, 5,0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위권 이하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 소득세가 누진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일률적으로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을 넘는 사람 모두 5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1억 2,000만 원 구간을 신설해 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도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와
연동된 4대보험까지 낮춰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가 조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기존 만 7세에서
8세로 올라갔다는 점, 마지막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영하 관람료도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요건에 맞게 사용하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죠. 꼭 환급이 아니더라도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봉의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한 뒤 체크카드와 현금을 쓰고
마트보다는 전통 시장 이용을 추천합니다. 혹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면 되고,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면 최근 5년간 빠진 항목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꼼꼼히 찾아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1년은 12달이지만, 13월의 월급을 받는 기쁨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